

교육문화센터

감사항목	시정 및 조치 요구 건수	처 리 결 과			비 고
		계	완결(계속추진)	추진중	
2	2	2	2		

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

(교육문화센터)

연번	감사항목	시정또는조치요구사항	처 리 계 획	완결여부	비고
54	각종 안전사고 대비책강구	○ 조명 등의 설치를 위한 무대상부에 대량의 추가 매달려 있어 자취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 므로, 안전점검 등을 강화 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	○ 공연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대기계기구 수가 40개 이상으로서 3년에1회 정기검사를 실시 하고 있으며 (우리군 46개) ○ 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4항의 규정에 의거 자체계획에 의한 상부, 하부무대시설, 전기 설로 구분하여 검사주기에 따라 주간검사1회, 월간 검사1회, 반기검사1회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 철저를 기하고자 함	(완결) 연중추진	

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

(교육문화센터)

연번	감사항목	시정또는조치요구사항	처 리 계 획	완결여부	비고
55	문화센터 각종 기기운용 철저	<p>○ 현재 문화센터 내 디지털 방식의 좋은 음향시설이 내장되어 있으나 조작 기술 등에 문제가 있는지, 음향 설비를 보유하고도 사용을 못하고 경비를 들여 외부의 설비를 대여 사용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, 향후 조작 가능한 기술 습득 등 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행사·공연 대관시 자체시설을 활용(Service)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하기바람.</p>	<p>○ 공연법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무대예술전문인 (음향. 조명) 3급이상 각1명씩 채용 공고하였으나 낮은 보수로(9급)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직 (전기)으로 대체 근무하고 있으나 인사시 잦은 이동로 인하여 기술 연속성과 전문화 애로</p> <p>○ 음향시설 조작 기술 등에 문제는 없으며 고객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무대예술 전문교육(음향) 년1회 이상실시, 우리군과 유사기종 장비를 보유한 우수문화예술회관과 기술교류 년1회 실시하고 있음.</p> <p>○ 대관 공연시 무대음향 보조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학예 행사성 공연 등은 자체 보조인력이 없으므로 음향의 보조인력 지원이 가능한 “음향렌탈”을하고 있으며, 기타 모든 대관공연, 등은 문화센터 자체 장비 (조명, 음향)을 사용하고 있음</p>	완 결	